

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945
----------	-----

제 출 일 : 2026. 4. 7.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4(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)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(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)
-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
- 「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업무제휴·협약의 체결방법)

○ 추진 필요성

- 법률에 따른 수탁 대상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업무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, 조사결과를 보호구역 관리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위탁사무 내용

○ 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

- 교통사고 및 교통안전시설 현황조사, 통행량 및 통학 동선 조사,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,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, 도면 작성 등

3. 위탁시설 개요

○ 관내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114개소 (통합·중복 제외)

구분	합계	어린이보호구역	노인보호구역	장애인보호구역
개소수[개]	114	104	7	3
총연장[m]	62,245	60,250	1,635	360
평균연장[m/개]	546	579	233	120

4. 민간위탁 기간

-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. 12. 31.까지

5. 수탁기관 선정방식

- 수탁기관 : 한국도로교통공단 (경찰청 산하 공공기관)
- 수탁방법 :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

*** 관련법률에 지정된 전문기관으로, 수탁기관 선정 심의 생략**
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 제외

6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- 소요비용 : 약 280백만원 (도비 50%, 시비 50%)
 - 2026. 3. 17. 도비 보조금 최종 확정 및 교부 결정 통보(경기도)
- 산출근거 : 총연장 62km × 4.5백만원/1km = 약 280백만원
 - *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배포 2026년 원가산출 내역서 기준

7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구 분	검 토 의 견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직접조사 또는 일반 용역계약을 통한 조사가 가능하지만 현장조사, 도면 작성, 개선안 수립, 통합관리시스템 자료 입력 및 관리 등 업무 범위가 과다하여 담당 공무원의 직접 수행은 어렵고,○ 일반용역사보다는 관련지침을 수립·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결과 도출 필요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과업 수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
경제적 효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위탁비용은 관련지침에 따른 과업범위에 적합하게 수립된 경찰청 표준원가계산에 근거하고,○ 2024년부터 실태조사를 수행했던 기관으로 업무의 연속성 확보에 따른 안정적 결과물 도출 및 효율성 증가 기대
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「도로교통법」을 관할하는 경찰청 산하기관으로써 교통 안전분야에 축적된 경험 및 관련 전문인력 활용 가능

구 분	검 토 의 견
성과 측정의 용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사 범위 및 방법 등 관련지침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내실있는 성과 도출이 가능하고, ○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연계지표로 조사 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에서 최종 평가 수행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(지도·점검)에 따라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이 가능하고, ○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과업 수행의 투명성 확보 기대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4년부터 우리 시 실태조사를 지속 수행한 기관이자, 실태조사 지침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일반용역사나 타 교통전문기관 보다 양질의 결과 도출 가능
총 합 의 견	<p>'24년 법령 개정에 따라 시행된 초기단계로, 일반용역사나 타 기관의 수행 경험이 부족함에 따라, 관련지침을 수립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공신력 있고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</p>

8. 향후 계획

- 2026. 5. :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(시, 한국도로교통공단)
 - 한국도로교통공단 협약안 협의 및 변호사 자문결과 반영

첨부

협약(안)

**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·노인·장애인
보호구역 실태조사 위·수탁 협약서**

2026. 3.

**남 양 주 시
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**

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위·수탁 협약서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의 목적은 남양주시장(이하“위탁자”라 함)이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지역본부장(이하“수탁자”라 함)에게 위탁하는 「남양주시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」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제2조(위탁업무 범위 및 재 위탁) ① 이 협약에 의한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고, 세부 업무추진 절차는 “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” 및 설계서상의 “과업내용서”에 따른다.

1.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분석
2. 보호구역 시설·통행량 현황조사 및 문제진단
3.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 및 도면작성
4.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입력
5. 기타 분석 및 보고 등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

② “수탁자”는 제1항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업무의 범위 중 필요한 분야 (교통량 조사 등)를 “위탁자”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.

제3조(위탁기간 및 금액) ① 본 협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 ~ '26.12.31로 한다. 다만, “수탁자”의 해산 또는 사업포기 등의 사유 미 발생시 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의 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.

② 위탁금액은 “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”의 ‘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항목별 소요인력’을 기초로 계산된 금278,940,000원(금이억칠천팔백구십사만원)으로 한다.

제4조(위탁소요경비 지급 및 사용) ① “위탁자”는 “수탁자”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협약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업무 수행기간 동안의 소요경

비에 대하여 “수탁자”가 안내하는 지급시기 및 입금계좌에 따라 “수탁자”에게 지급한다. 다만 “위탁자”는 예산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요경비의 지급시기, 금액 등을 “수탁자”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다만, 수탁자는 수탁자의 내부 회계관리규정(한국도로교통공단 재무회계규칙)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.

- ② “수탁자”는 지급받은 소요경비를 협약된 업무내용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.
- ③ “수탁자”는 지급받은 소요경비를 업무 수행에 대한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외부기관 자문료, 회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5조(실태조사 결과 보고) ① “수탁자”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‘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’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고, 이 외에 “위탁자”가 실태조사 수행과 관련한 별도의 업무수행 보고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- ② “수탁자”는 사업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연간 실태조사 실시결과 보고서를 “위탁자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협약의 변경) “위탁자”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“수탁자”의 요청이 있거나,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“수탁자”와 협의를 거쳐 소요경비 및 업무수행기간 등의 협약사항 또는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7조(협약의 해지 등) ① “수탁자”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“위탁자”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1. 실태조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, 위법·부당하게 처리한 때
- 2. 명백한 책임으로 인하여 협약을 위반한 때
- 3. 관계법령 및 위탁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등을 고의로 위반한 때

- ② “수탁자”는 “위탁자”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행이 불가능하

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이 협약을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“위탁자”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신의성실 의무) 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는 신의를 가지고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,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보안조치) “수탁자”는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0조(기밀준수 의무) “수탁자”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“위탁자”의 주요업무 사항을 “위탁자”의 허락 없이 제3자나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되며, “수탁자”의 업무담당자 이외의 소속직원이 알지 못하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11조(손해배상) ① “수탁자”는 “수탁자”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실태조사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“위탁자”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지로 “수탁자”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“위탁자”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가 협의하여 정한다.

④ “수탁자”는 실태조사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“수탁자”의 부담으로 배상한다. 다만, 그 손해의 발생이 “위탁자”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“위탁자”가 배상한다.

제12조(민·형사상의 책임 등) ① “수탁자”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.

② “수탁자”는 고의 및 중과실로 보호구역 내 재산을 훼손하거나 망실한

때에는 “위탁자”에게 변상하여야 한다.

- ③ 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“위탁자”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배상하였을 경우 “수탁자”는 그에 대해 고의 및 중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3조(관할법원)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“위탁자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제14조(권리.의무의 양도 제한) “수탁자”는 “위탁자”의 사전 동의 없이 이 협약에 의한 권리·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15조(재산권) ① 위탁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“위탁자”에게 귀속된다.

- ② “수탁자”는 “위탁자”의 승인을 얻어 업무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위탁자”의 업무 위탁계획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.

제16조(관계자료의 제출 등) “수탁자”는 “위탁자”로부터 업무추진현황, 관계서류 열람, 관계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제17조(관계법규의 준수 등) ① “수탁자”는 이 협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·관리함에 있어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②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”, “지방재정법”, “지방회계법”, “지방자치법”, “한국도로교통공단 재무회계규칙” 등의 법규에 따른다.

제18조(협약의 해석)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판례 및 회계 관계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“위탁자”가 결정한다.

2026년 월 일

위탁자: 남양주시장 주광덕 ㉠
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(금곡동)

수탁자: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지역본부장 정일섭 ㉠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3로 41